

전담직교수운영규정

제정 2010. 9. 1
 개정 2012. 9. 1
 개정 2014. 1. 1
 개정 2014. 4. 1
 개정 2015. 12. 1
 개정 2016. 3. 1
 개정 2017. 2. 1
 개정 2018. 2. 2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4조와 제5조 등에 규정한 전담직 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일반직 교수에서 전담직 교수로 전환 임용된 자와 전담직 교수로 신규 임용된 자에 한해 적용한다.

제3조(전담직 교수의 역할과 의무) ① 전담직 교수라 함은 전임교수의 임무인 학생교육, 지도, 연구, 산학협력 등의 업무분야 중 하나를 전담하여 맡는 형태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② 전담직 교수로는 강의전담, 산학협력전담, 연구전담 등을 둘 수 있다.

③ 일반직 교수에서 전담직 교수로 전환된 자의 직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담직 교수로 신규임용된 자의 직급은 조교수로 하나, 특별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담직 교수의 책임시수는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전담업무의 특성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임용절차) ① 전담직 교수의 신규임용에 따른 자격, 심사절차 및 기준 등은 교원인사규정의 일반직 교수 신규 임용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담직 교수의 재임용 절차는 일반직 교수의 재임용 절차와 동일하다.

제5조(재계약) ① 전담직 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임용기간 만료 자는 재임용 절차에 의해 재임용 심의를 받아 재임용한다.

③ 전담직 교수의 재임용 기준은 임용기간 동안 전담직 교수 업적평가 평균 650점(1,000점 만점)으로 하며 미달자의 경우 재임용을 거부할 수도 있다.

④ 대학 혹은 학과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여 총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③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수) 전담직 교수의 보수는 기본 연봉(성과연봉 제외)만 지급한다. 단, 신규임용으로 전담직 교수가 된 자의 보수는 계약조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일반직 교수로의 전환) ①전담직 교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일반직 교수로 전환 할 수 있다

1. 일반직 교수에서 전담직 교수로 전환 임용된 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할 시, 전담직 교수로 최초 임용된 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할 시, 자의에 의해 전담직 교수로 전환한 자가 임용기간 만료 또는 임용 기간중 일반직교수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는 최근2년 동안 업적평가 평균 700점(1,000점 만점)이상을 취득한 경우 전환심사의 대상이 되고, 소속 스쿨원장평가(20%), 부총장평가(10%), 교원인사위원회 평가(10%)와 전담직 교수로 임용기간 중 교원업적평가 평균(60%)을 종합하여 80점/100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대학발전 계획에 따라 총장이 추천하는 경우, 일반직 교수로 전환을 할 수 있다.

②일반직 교수로 전환된 자는 직급별 임용기간에 맞게 재임용한다.

③<삭제>

④일반직 전환심사 청구는 대상 교원당 연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8조(평가) 전담직 교수 업적평가는 별도로 정한다.

제9조(기타 처우) 전담직 교수의 업무 및 보수 외의 기타 처우는 우리대학 일반직 교수 처우와 동일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자 신규임용 전담직 교수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자 신규임용 전담직 교수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서식 1) 일반직 교수 전환 신청서

일반직 교수 전환 신청서

신 청 자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최초임용일		임용기간	
전환 신청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전담직 전임교수에서 일반직 전임교수로 전환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_____(인)

교원인사위원장 귀하